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수집력 강화방안 연구

A Study of the Strengthening Legal Deposit Collection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윤 희 윤 (Hee-Yoon Yoon)*

목 차

- | | |
|-------------------------------|-----------------------------|
| 1. 서론 | 3.1 가칭 「납본법」 제정 |
| 2.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수집 분석과 대상 자료 추계 | 3.2 납본규정(지침, 기준)의 추가 개발과 보완 |
| 2.1 국가장서 개발정책과 납본관련 과제 | 3.3 실정법의 납본조항 및 내용 개정 |
| 2.2 납본중심의 수집현황과 구성내용 | 3.4 납본수집 대상자료의 합리적 유형화 |
| 2.3 납본수집 대상자료의 모집단 추계 | 3.5 자료유형별 납본수집 범위의 최적화 |
| 3.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수집력 강화방안 | 4. 요약 및 결론 |

초 록

모든 나라에서 국가도서관을 위한 법정 납본은 자국에서 생산된 오프라인 및 온라인 출판물을 수집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서개발 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취약한 납본시스템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생산·제작된 모든 유용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정 납본에 근거한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의 현주소를 분석하고 연간 발행·제작되는 출판물의 총량을 추정한 다음에 이를 근거로 납본수집력 강화방안, 즉 가칭 '납본법' 제정을 비롯한 납본규정(지침, 기준)의 추가 개발과 보완, 도서관법상의 납본조항 및 내용 개정, 납본수집 대상자료의 합리적 유형화, 자료유형별 납본수집 범위의 최적화 전략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legal deposit for the national library in all countries is the most important mean for acquiring the country's off-line and on-line publications. Because of many limitations of legal deposit system, however,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does not properly collect the useful materials produced or manufactured in Korea.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author analyzed the status of collection development by legal deposit and estimated the total amount of domestic publications. Based on the these results, author suggested five plans for strengthening the national collections in terms of the provisional 'deposit law', the further development and complementary of current legal deposit regulations (guidelines and standards), desirable amendments of the legal deposit provisions in library act, reasonable division of the deposit targets, and optimization strategies of acquisition scope by material types.

키워드: 법정 납본, 국가장서, 장서개발, 국가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Legal Deposit, National Collection, Collection Development, National Librar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hy@daegu.ac.kr)

논문접수일자: 2014년 7월 15일 최초심사일자: 2014년 8월 6일 게재확정일자: 2014년 8월 11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3): 5-26, 2014. [http://dx.doi.org/10.4275/KSLIS.2014.48.3.005]

1. 서론

모든 국가도서관의 장서는 체계적 수집과 무결성 보존의 결과이기 때문에 자국의 지적 역사와 정신문화를 대변한다. 이를 유인하는 국제적 규범은 유네스코의 「디지털 유산의 보존에 관한 헌장」 제8조(도서관, 문서관, 박물관, 기타 공공 보존서의 아카이브 관련법령 및 법적 또는 자발적 납본은 국가보존정책의 핵심요소로서 디지털 유산을 포함해야 한다)이고, 범정부의 제도적 장치는 법령에 규정된 납본제도이며, 정책적 기제 및 실무적 준거는 장서개발정책이다. 따라서 국가도서관 중에서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은 법제적 및 정책적 근거를 바탕으로 납본수집을 강화하되 영인·복제, 매체변환, 디지털 아카이빙 등을 총동원하여 한국의 지식문화유산인 국가장서를 집중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외국의 학술연구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선별·구입하여 선진국 수준의 국가장서를 구축해야 한다.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집방법은 법정 납본(legal deposit)이다. 이 제도를 규정한 각국의 「납본법」, 「도서관법」, 「저작권법」 등은 대개 속지주의를 적용하여 자료를 발행·제작한 자에게 납본할 권리를 인정하는 동시에 납본의무를 강제하는 한편, 국가도서관에 납본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납본자료의 보존관리 및 접근이용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양대 주체가 법적 권리와 의무를 다할 때 국가장서가 충실해지고 당대 및 후대의 접근이용권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여러 법적 및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납본수집에서 적지 않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 정황으로는 우선 e-CIP를 통한 출판물

서지통정에 대한 생산자의 인식부족, 대한출판문화협회를 비롯한 출판계와 국립중앙도서관의 실효적 협력기제 부재, 납본조항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연간 발행·제작되는 총량이 집계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생산·제작된 유용한 자료는 유형과 형태를 불문하고 납본되어야 함에도 누락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디지털 자료는 납본주체의 법적 납본에 대한 이해 부족, 납본 보상금 지급예산의 문제, 인터넷 접근·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우려, 납본자료의 변조 가능성과 소멸성 등으로 인하여 아카이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지막으로 2000년 이후에도 여러 논문(윤희운 2003; 최재황 등 2009; 노영희 2009; 오선영, 정연경 2012)에서 납본제가 논급되었음에도 법제적, 정책적, 실무적 측면을 아우르는 종합적 해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 및 납본수집의 현주소를 분석한 다음에 연간 발행·제작되는 총량을 추정하여 모집단을 설정하고 수집력 강화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고자 한다. 납본수집력 강화는 지식유산 총괄기관으로서의 역량과 위상을 높이는 첩경일 뿐만 아니라 출판유통 및 문화선진국을 견인하는 기초 작업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2.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수집 분석과 대상자료 추계

2.1 국가장서 개발정책과 납본관련 과제

먼저 1945년 10월에 개관한 '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은 1963년에 제정된 국내 최초

의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그 명칭을 ‘국립중앙도서관’(The National Library of Korea)으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른 법정 업무는 2006년 10월 4일자로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법률 제8029호) 제19조 각호에서 <표 1>과 같이 규정한 이래로 변화가 없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업무는 제2호인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이다. 이를 위하여 2011년에 발표된 장서개발정책은 기본방향을 다음의 7가지로 설정하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11, 5-7).

첫째, 이념적 기초에는 모든 관중의 도서관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도서관, 국내에서 발행·제작된 자료의 납본도서관, 한국인의 정신세계와 지식문화를 축적·전수하는 보존도서관, 그리고 인터넷 및 디지털 정보유통 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을 반영한다.

둘째, 정책범위는 자료수집 차원을 넘어 모든 도서관자료의 선정과 수집에서 제작과 폐기까지를 포괄하는 장서관리로 확장한다.

셋째, 정책대상은 국내외에서 생산·제작되는 인쇄매체 중심의 아날로그 자료와 전자자료 및 인터넷 정보자원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콘텐츠를 포괄하는 하이브리드형 자료를 개발의 범주로 한다.

넷째, 개발방법은 전통적 수집방법인 납본, 구

입, 수증, 교환, 기탁 등과 디지털 정보기술을 활용한 매체변환, 영인제작, 복제 등을 적용한다.

다섯째, 개발수준은 자료의 유형별, 매체별, 주제별 중요성과 수집강도를 명시한 지표를 적용함으로써 인식도를 제고시키고 실용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장서로서의 중요성 및 수집 강도에 대한 수준을 기호화한다.

여섯째, 정책의 수혜자 집단은 모든 국민으로 하되, 자료유형 및 주제에 따라 목표집단을 차등화한다. 예컨대 국내자료의 납본수집 등은 모든 국민을 위한 장서개발이지만, 외국자료의 주제별 개발과 디지털 회색문헌을 수집하기 위한 인터넷 장서개발은 연구자를 목표 집단으로 설정한다.

일곱째, 장서개발정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선진국 장서개발정책과 자료 환경변화를 주시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

다음으로 NLK는 2014년 1월에 중장기 발전 계획인 「국립중앙도서관 2014~2018」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문서에서 천명한 비전과 목표, 납본관련 추진과제를 간추린 <표 2>를 보면 첫 번째 목표인 ‘국가 지식정보자원 수집·보존 강화’ 아래에 2개 추진과제(납본제도 정비와 개선, 납본수집 및 수증 강화)를 명시하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14, 18-19). 즉, 납본제 개선을 통한 수집력 강화가 핵심 추진과제이다.

<표 1> NLK의 법정 업무

1.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6.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2.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7. 도서관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3.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	8.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9. 그 밖에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등
5.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표 2〉 NLK 중장기 계획의 납본관련 추진과제

비전	목표	추진과제	
창조적 지식문화 강국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도서관	1. 국가 지식정보 자원 수집·보존 강화	1-1 국가 지식정보자원 수집 기반 구축	1-1-1 납본제도 정비와 개선 1-1-2 장서관발정책 정비 1-1-3 조직체계 정비 및 인적 역량 강화 1-1-4 국가문헌의 망라적 수집을 위한 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 활용
		1-2 국가 지식정보자원의 망라적 수집	1-2-1 납본 수집 및 수증 강화 1-2-2 디지털 정보자원의 수집 기반 강화 1-2-3 한국관련 지식정보자원의 발굴 수집 강화 1-2-4 국가 정책·연구정보 수집력 강화
		1-3 국가 지식정보자원 보존관리 강화	1-3-1 국가장서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1-3-2 지식정보자원 보존·복원 역량 강화 1-3-3 디지털 지식정보자원 보존관리 기반 강화 1-3-4 보존관리체계 조직화 및 연구개발 역량강화

2.2 납본중심의 수집현황과 구성내용

NLK는 장서관발정책에 입각하여 납본, 구입, 수증, 교환, 기탁, 자체생산(매체변환, 영인 제작, 복제), 아카이빙 등의 방식으로 국가장서를 수집·보존·제공하고 있다. 2012년말을 기준으로 수집방법별 현황을 집계한 〈표 3〉을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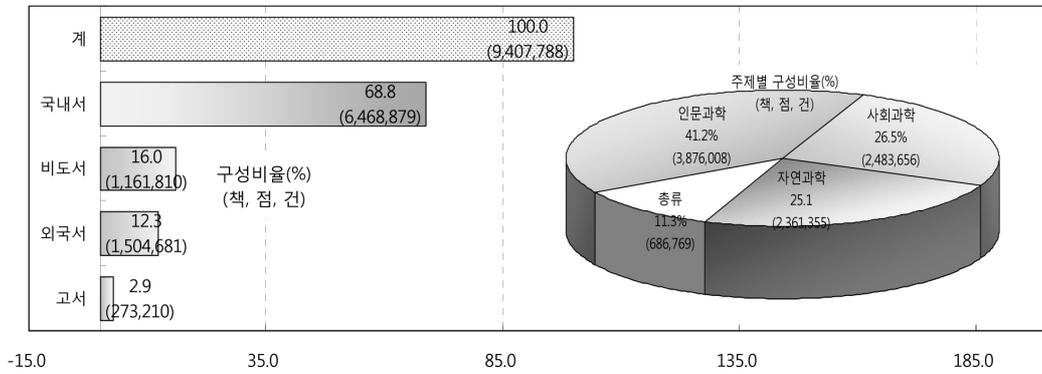
면 납본수집이 전체의 6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국립중앙도서관 2012, 297-298). 이를 단행본으로 한정하면 납본수집이 무려 86.1%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납본수집 비중은 전체 장서관에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1월말을 기준으로 총 9,407,788책(점·건)¹⁾의 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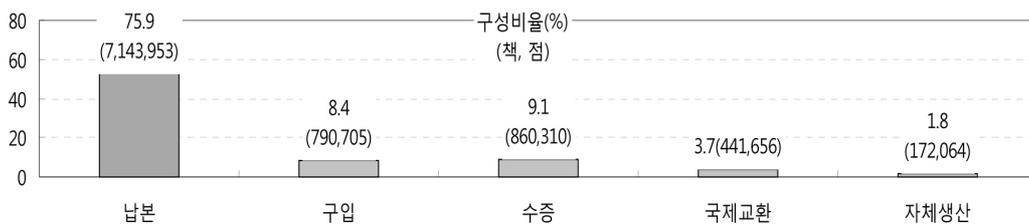
〈표 3〉 NLK 연차증가량의 수집방법별 현황

자료유형	수집방법	납본	구입	교환	수증	자체생산	영인복제	아카이빙	계
		단행본	도 서	287,140	31,198	2,688	10,100	314	0
	비도서	53,769	798	2,402	1,374	759	424	0	59,526
	소 계	340,909 (87.1)	31,996 (8.2)	5,090 (1.3)	11,474 (2.9)	1,073 (1.4)	424 (0.1)	0 (0.0)	390,966 (100.0)
연속간행물	도 서	243,267	10,182	5,205	1,476	0	0	0	260,130
	비도서	2,155	390	310	0	575	0	0	3,430
온라인자료	단행본	0	19,885	0	50,304	10,861	0	80,504	161,554
	연속간행물	0	98,260	0	16	0	0	0	98,276
	계 (%)	586,331 (64.1)	160,713 (17.6)	10,605 (1.2)	63,270 (6.9)	12,509 (1.4)	848 (0.05)	80,504 (8.8)	914,356 (100.0)

1) <http://www.nl.go.kr/nl/havdata/havdataShow.jsp> [cited 2014. 6. 20.].



〈그림 1〉 NLK 소장자료의 유형별 및 주제별 구성비율



〈그림 2〉 NLK 소장자료의 수집방법별 구성비율

및 주제별 구성을 압축하면 〈그림 1〉과 같다. 즉, 전자는 국내서 비중이 절대적이며, 후자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순으로 많다. 이를 위한 수집방법은 〈그림 2〉처럼 납본이 75.9%인 반면에 구입은 8.4%, 수증은 9.1%, 국제교환은 4.7%, 자체생산은 1.8%에 불과하다.

요컨대 NLK가 개발하는 국가장서의 수집방법별 의존도는 납본이 절대적인 가운데 구입, 수증, 자체생산, 교환 등으로 보완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지식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구심체로서의 자료수집력을 강화하려면 납본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료의 모집단 추정을 통한 납본수집력의 현주소를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2.3 납본수집 대상자료의 모집단 추계

도서관이 수집하는 자료는 인쇄자료(도서, 비도서)와 비인쇄자료(시청각, 마이크로, CD-ROM DB, 온라인 DB, 웹정보자원, 기타)로 대별할 수 있다. 기록방식에 따라서는 인쇄물(물리적 기록), 레코드(기계적 기록), 마이크로필름(화학적 기록), 자기테이프 등(전자기적 기록), CD-ROM과 레이저 디스크(광학기록)로, 정보속성을 기준으로 1차 자료(도서, 학술지, 학위논문 등)와 2차 자료(사전, 연감, 편람, 서지, 색인초록지, DB 등)로 유형화할 수도 있다(윤희운 2014, 6-68).

다만 『도서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각호는 NLK가 납본수집할 자료를 8가지(도서, 연

속간행물, 악보·지도 및 가제식 자료, 마이크로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 슬라이드·음반·카세트테이프·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등의 유형물, 점자·녹음·큰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출판환경 변화에 따른 신종 발간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정법상의 납본대상 구분기준은 일관성

과 논리성이 약하다.

이에 2011년말을 기준으로 NLK가 납본수집해야 할 모집단 추정을 위하여 인쇄자료, 회색문헌, 비도서자료, 전자자료로 대별한 다음에 인쇄자료는 발간비중이 높은 도서와 연속간행물로, 회색문헌은 학위논문·연구보고서·회의자료로, 비도서자료는 시청각과 지도로, 전자자료는 전자책·전자잡지·오디오북으로 각각 세분하여 발행·제작을 추계한 결과는 <표 4>

<표 4> NLK 납본수집 대상자료의 모집단 추계 결과

자료유형		모집단	소 계	추계 근거자료	
인쇄 자료	도서*	56,566종	56,566	• 대한출판문화협회 신간 발행부수 • 출판유통진흥원 통계	
	연속 간행물*	대중잡지·신문	13,269종	19,035	• 한국잡지협회 등록잡지종수 • 문화체육관광부 등록정기간행물종수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학술지	5,767종		
회색 문헌	학위 논문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	91,056건	91,750	• 교육통계서비스(http://cesi.kedi.re.kr) • 한국연구재단 외국박사학위신고자
		내국인의 외국박사학위논문	694건		
	연구 보고서	국가정책연구보고서	2,534건	10,478	• PRISM의 국가정책연구보고서 • NTIS 과학기술연구보고서 •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과학연구보고서 • 기타 약 2500개 주요 공공·민간기관 연구 보고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보고서	169건		
		KRF 기초학문자료센터 등재보고서	1,737건		
	회의 자료	기타 공공·민간기관 보고서	6,038건	10,701	• 전국 공공·민간기관 회의자료(홈페이지의 공지 및 행사, 학술대회(세미나, 워크숍 등), 강연 및 특강, 토론회, 포럼 등의 개최현황)
주요 공공·민간기관 회의자료집		5,455건			
비도서 자료**	시청각(비디오)자료(DVD, VOD, Blu-ray, HDCAM, Digi-Betacam 등)	4,837종	5,927	• 한국영상자료원 비디오자료 생산현황 •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 공간 정보 통계자료집	
	지도자료	1,090매			
전자 출판물	전자책	종이책의 전자책 출간	20만종	320,200	• 문화체육관광부의 전자출판물 발간현황 • 한국전자출판협회 인증센터의 인증건수
		전자책으로만 출간	8만종		
		만화 전자책	2만종		
		전자사전	200종		
	전자잡지/오디오북	2만종	-		
디지털 학술논문	200만종	-	-		
계		-	514,657		

* 단행본 및 연속간행물 형태의 정부간행물을 각각 포함

** 마이크로자료는 제외

와 같다(김홍렬 2012, 147-168). 다만, 인쇄자료 중 지도를 제외한 팜플렛과 리플렛, 비도서자료 중 악보와 마이크로 자료, 전자자료 중 전자저장장치(USB, 메모리카드), 소프트웨어 등은 발행·제작을 추적하기 어려워 제외하였다.

요컨대 NLK가 납본수집해야 할 모집단의 최소 크기는 514,000여종(전자출판물을 제외하면 194,460종)이다. 그 가운데 『도서관법』 제30조2의 제2항에서 규정한 온라인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는 국가장서에 편입시킬 정도로 내용적 및 형태적 가치가 충분하면 납본수집력을 강화해야 한다.

3.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수집력 강화방안

주요 문화선진국과 비교한 NLK의 납본수집력은 상당히 취약하다(국립중앙도서관 2012, 56-57).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해법

이 필요하다. 법적 측면에서 납본법제의 전향적 개편, 납본규정(지침, 기준)의 추가 개발과 보완, 실정법상 납본조항의 구체적인 개정, 납본수집 대상자료의 합리적 유형화, 자료유형별 납본수집 범위의 최적화 등을 중심으로 납본수집력 강화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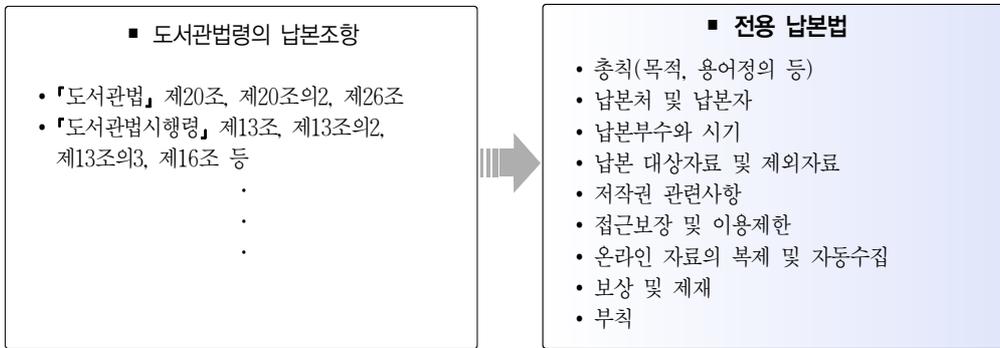
3.1 가칭 「납본법」 제정

현행 『도서관법』은 제20조에서 납본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세계 36개국을 분석한 결과, <표 5>와 같이 5개국(캐나다, 독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은 국가도서관법에서 납본조항을 규정하였으며 17개국(영국, 이탈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은 전용 납본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차이에 주목하면 NLK가 국가장서를 망라적으로 수집·보존하고, 국민의 국가장서 접근 및 이용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저작권 침해 및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도서관법 또는 납본법 제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표 5> 세계 각국의 납본제도 법적 근거 비교

법적 근거	국가	국가명	소계	계 (괄호속 제외)
납본법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라트비아, 이란, 남아공, 나이지리아, 세네갈, 알제리	17	36
국가도서관법		캐나다, 독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5	
도서관법		한국, 대만*	2	
저작권법		미국, 호주, 중국, 아이슬란드, 멕시코	5	
문화재법		프랑스	1	
정부간행물법		대만*	(1)	
매체법(도서·신문 등)		오스트리아, 체코, 이스라엘, 인도	4	
언방법		브라질, 러시아	2	

* 대만은 「도서관법」과 「政府出版品管理辦法」에서 국가도서관을 위한 납본제도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림 3〉 가칭 「납본법」 제정(안)

그 가운데 중앙부처의 1차 소속기관인 NLK를 위한 설치·조직 등을 규정한 법률의 제정이 어렵다면 납본전용 법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차선책이다.

가칭 ‘납본법’은 납본 또는 제출을 규정한 『도서관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제26조, 『도서관법시행령』 제13조 및 제16조 등을 발췌·보완하여 NLK 및 지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한 기본구조와 주요 내용은 〈그림 3〉처럼 총칙(목적, 용어정의 등), 납본처 및 납본자, 납본부수와 시기, 납본 대상자료 및 제외자료, 저작권 관련사항, 접근보장 및 이용제한,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한 복제물 제작 및 자동수집, 보상 및 제재, 부칙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법리적 측면에서 여러 실정법에 규정된 납본조항의 부실과 산만함을 해소하는 동시에 체계성을 확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논리적 정당성은 2000년에 UNESCO가 제시한 『법정납본의 법제화 지침』에서 ‘납본은 별개의 납본법 또는 국가도서관법과 같은 다른 법령의 일부로 제정되어야 하며, 그 목적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요건(J. Larivihre 2000, 46-47)에 가장 부합한다.

현실적 타당성은 자료를 발행·제작한 자가 통합법을 제대로 인지하면 다른 여러 법률검토와 그에 따른 실무적 및 심리적 부담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준법의식과 납본 실효성을 높이는데 유리하다.

다만 가칭 ‘납본법’과 ‘국가도서관법’의 법제화를 비교하면 전자는 법리적 체계성과 일관성 유지에 유리한 반면에 NLK를 범국가적 납본업무 책임기관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후자보다 법적 실효성이 떨어진다. 게다가 국내의 경우, 기관이기주의가 실재할 뿐만 아니라 여러 피납본 기관과의 관계를 감안할 때 통합법 제정에 대한 저항도 감내해야 한다.

3.2 납본규정(지침, 기준)의 추가 개발과 보완

어떤 법제를 채택하든 NLK의 담당부서 및 인력이 납본실무에 충실하는 한편, 자료를 발행·제작한 자가 성실하게 납본하도록 유인하려면 법령에 규정할 수 없거나 구체화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지침이나 기준을 추가로 개발·보완해야 한다. 이러한 당위성은 국내의 납본관련 법적 근거와 하위법규 등을 정리한 〈표 6〉에서

〈표 6〉 각국의 납본관련 법률에 근거한 하위법규 및 지침·기준 현황

국 가	법률	하위법규(시행령, 규정, 규칙, 고시)와 지침·기준
미 국	저작권법	• 저작권 등록규칙
캐나다	캐나다도서관문서관법	• 출판물 법정 납본규정 • 온라인 출판물 법정납본 지침
영 국	법정납본도서관법	• 비인쇄자료 납본규정
독 일	독일국가도서관법	• 시청각자료 납본규정, 장서지침
프랑스	문화재법전	• 법정납본 시행령
호 주	저작권법	-
뉴질랜드	국가도서관법	• 도서 및 정기간행물의 국가도서관 납본고시 • 전자자료 국가도서관 납본고시
일 본	국립국회도서관법	• 국립국회도서관법에 의한 출판물의 납입에 관한 규정 • 국립국회도서관법에 의한 인터넷 자료의 기록에 관한 규정 • 패키지계 전자출판물의 국립국회도서관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최선판의 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건 • 국립국회도서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납입하는 출판물의 대상금액에 관한 건 • 국립국회도서관법 제25조의3 제3항의 인터넷자료 등에 관한 건 • 국립국회도서관법에 의한 출판물의 납입에 관한 규정 제1조에서 규정하는 국가의 모든 기관이 납입하는 출판물의 부수에 대하여
대 만	도서관법, 政府出版品管理辦法	• 國家圖書館數位出版品送存要點 • 政府出版品管理作業要點
한 국	도서관법	• 도서관법시행령 •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 •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디지털 파일형태에 관한 고시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NLK는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이 하위 법규로 위임한 사항과 실무수행의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실정법령에 규정된 납본조항을 중심으로 추가 제정 또는 수정·보완해야 할 지침과 기준을 적시하면 〈표 6〉과 같다.

먼저 고시로 제정해야 할 지침과 기준은 「도서관법」 제20조 제3항에서 규정한 납본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기준과 절차, 제2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NLK가 선정하여 수집·보존해야 하는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의 기준, 제2항의 온라인 자료 제공에 따른 협조의 형식 및 요청에 관한 지침, 「도서관법시행령」

제13조 제7호에서 규정한 장애인용 특수자료 종류의 기준 등이다. 이들을 집약하면 〈표 7〉과 같다.

다음으로 기존 고시의 경우, 2010년에 공포된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디지털 파일형태에 관한 고시」와 2011년의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가 있다. 그러나 전자는 2010년말로 법적 효력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검토해야 하고 후자는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후자의 경우, NLK가 수집대상으로 규정한 제3조는 〈표 8〉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7〉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정보완하거나 제정해야 할 납본관련 지침과 기준

구 분	주요 내용	기존의 지침과 기준	개정·제정해야 할 지침과 기준		
도서 관법	제20조 (도서관 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수정증보판의 기준 정당한 보상의 지침	
	제20조의2 (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 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의 기준 자료제공에 대한 협조의 형식 및 요청에 관한 지침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 (도서관 자료의 납본)	①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 납본하는 도서관자료는 다음 각 호의 도서관자료로 한다. 1. 도서 2. 연속간행물 3. 악보, 지도 및 가제식자료 4. 마이크로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 5. 슬라이드 ... 등 시청각자료	-	도서의 기준 연속간행물의 범위 -	
		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등 유형물	-	제4호 전자자료와 제6호 전자출판물의 구분	
		7. 점자자료, 녹음자료 및 큰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	장애인용 특수자료 종류의 기준	
		8. ...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도서관자료	-	-	
		②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 디지털 파일형태는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고시한다.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디지털 파일 형태에 관한 고시 (제2010-2호)	2010년말 법적 효력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	
		제13조의2 (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 는 ... 국립중앙도서관장이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한다.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 (제2011-1호)	수정·보완
				-	온라인 자료가 한국에서 발행·제작 또는 공표된 것인지의 판단기준

〈표 8〉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의 개정안

조문	현행 고시	개정안	비 고
제3조 (종류)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웹사이트 2. 웹자료 1) 문자자료(전자책, 전자저널, 학위논문, 보고서, 전자신문 등) 2) 음성·음향자료(음악자료, 음성자료, 음향자료 등) 3) 영상자료(방송, 영화, 공연, 이러닝자료 등) 4) 이미지자료(사진, 회화 등)	온라인 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태생적 디지털 자료(웹사이트, 전자책, 전자잡지, 전자신문, DB 등) 2. 인쇄자료의 디지털 버전(전자책, 전자잡지, 학위논문, 보고서, DB 등) 3. 온라인 음성·음향자료(음악자료, 음성자료, 음향자료 등) 4. 기타 온라인 자료(디지털 이미지, 사진, 회화 등)	• 자구 '수집대상' 삭제 (이유: 고시명칭과의 중복성) • 웹자료 종류의 재구성 • 영상자료 중 방송, 영화, 공연 삭제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영화, 비디오물을 제출받는 형식으로 수집·보존함)

3.3 실정법의 납본조항 및 내용 개정

3.3.1 납본주체(납본 의무자)의 확대

현행 「도서관법」 제20조 제1항은 납본주체를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환언하면 동법 제2조에서 규정한 도서관자료(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 가운데 온라인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는 발행·제작한 자가 의무적으로 납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쇄자료의 배포권을 보유한 자, 온라인 자료를 발행·제작한 자, 외국자료를 수입·유통시키는 자는 납본의무가 없다. 반면에 주요 국가의 납본법령에 규정된 납본주체를 비교·분석한 <표 9>를 보면 독일은 외국자료의 자국 배포권 및 유통권자들, 프랑스는 외국자료의 수입자·배포권자·유통자들, 뉴질랜드는 자료에 출판자명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인쇄자가 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면 납본 의무자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 출판된 자료로서 최초 배포권을 가

진 자가 국내에 소재지, 사업소 또는 주된 주소를 두는 경우에는 납본 의무자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도서관법」 제20조 제1항을 보완해야 국가장서의 망라적 수집 및 보존기능을 강화하는데 유리하다.

3.3.2 납본대상 및 제외자료의 구체화

납본대상 자료는 「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 자료의 납본) 제4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총 8가지(도서, 연속간행물, 악보·지도 및 가제식 자료, 마이크로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 슬라이드·음반·카세트테이프·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 디스크·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등 유형물, 점자자료·녹음자료 및 큰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출판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도서관자료)로 규정한 반면에 제외자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반면에 주요 국가의 납본대상 및 제외자료를 비교하면 <표 10>과 같다.

<표 9> 국가별 납본주체(의무자)의 비교

구분	저작권자	출판(권)·발행자	인쇄자	제작자	배포·유통권자	수입자	비고
미국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회화, 도형, 조각물의 저작권자로서 5부 미만을 복제·생산한 자, 환경권 발행자로서 금전적 부담·부당·비합리적이면 면제가능 •독일: 배포권자는 소재지, 사업소 또는 주된 주소가 독일에 있는 경우에 해당됨 •뉴질랜드: 인쇄자는 자료에 출판자명이 나타나지 않고,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 적용됨 •일본: 국가, 지방공공단체, 독립행정법인, 민간출판자 •대만: 정부기관 및 소속기관, 학교, 개인, 법인, 단체 •한국: 장애인용 디지털 파일을 제외한 온라인 자료의 발행·제작자는 제외됨
캐나다		■					
영국		■					
독일		■			■		
프랑스		■		■	■	■	
호주		■					
뉴질랜드		■	■				
일본		■					
대만		■					
한국		■		■			

〈표 10〉 국가별 납본대상 및 제외자료의 비교

자료유형		국가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대만	한국	
인쇄자료	도서		○	○	○	○	○	○	○	○	○	○	
	연속간행물(잡지, 신문, 보유판, 가계식 출판물 등)		○	○	○	○	○	○	○	○	○	○	
	회색 문헌	정부간행물		○	○	○	○	○	×	○	○	○	○
		학위논문		○	○	○	○	○	○	○	○	○	×
		연구보고서		○	○	○	○	○	○	○	○	○	×
	학술회의, 세미나 자료		○	○	○	○	○	○	○	○	○	△	
소책자·단매물(약보, 지도, 설계도, 해도, 도표 등)		○	○	○	○	○	○	○	○	○	○		
비인쇄자료	시청각	시각자료(슬라이드, 필름스트립 등)		○	○	○	○	○	○	○	○	○	
		청각자료(음반, 테이프, CD, 녹음물 등)		○	○	○	○	○	○	○	○	○	
		시청각자료(CD, DVD, VCD, 테이프 등)		○	○	○	○	○	○	○	○	○	
		영화필름(방송 영상자료)		○	○	×	×	×	○	×	○	×	
	마이크로	필름과 피시, 울트라피시, 애플퓨터 카드 등		○	○	○	○	○	○	○	○	○	
전자자료	오프라인(패키지계)	자기매체		○	○	○	○	○	○	○	○	○	
		광학매체(CD, DVD 등)		○	○	○	○	○	○	○	○	○	
		전자저장장치(USB, 메모리카드)		×	×	×	×	×	○	×	×	×	
	온라인	웹사이트		○	○	○	○	×	○	○	○	×	
		웹정보(개인파일, 전자게시판, 전자우편 등)		○	○	×	○	×	○	○	×	×	
		웹DB(전자잡지 등)		△	○	○	○	×	○	△	×	×	
		네트워크 자료, SW, 검색엔진, 컴퓨터 게임		△	○	△	○	×	○	○	×	×	
디지털 파일		×	○	×	○	○	×	△	○	△			
기타	외국 수입자료		×	×	×	×	○	×	×	×	×		
	거래목록, 광고·홍보자료, 운행시간표, 백지장부나 서식, 달력·비망록, 학생 리포트, 보도자료 등		×	○	×	×	×	○	×	×	×		
	포스터, 메달 등		×	×	×	×	○	×	×	×	×		

* ○는 납본대상자료, ×는 납본 제외자료, △는 일부 자료가 납본대상인 경우임

따라서 『도서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각 호에 온라인 자료(웹사이트, 전자게시판, 전자우편, 전자잡지를 포함한 웹DB, 네트워크 전자출판물, 소프트웨어, 검색엔진, 컴퓨터 게임, 디지털 파일 등)를 납본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보완·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에 회색문헌인 학위논문과 연구보고서는 각 호에 규정된 자료범주에 포함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물론 유네스코 도서분량 기준을 적용하여 도서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며, 실제로 연구보고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이 집중적으로 수집·보존하며 국가연구비로 생산된 연구보고서는 국가기록원

과 한국연구재단도 의무제출 형식으로 수집하고 있다. 그리고 학술회의 및 세미나 자료의 경우, 간기나 연차가 표기되었으면 연속간행물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자료도 많기 때문에 납본대상으로 간주하기가 애매하다. 이러한 해석상 혼란을 차단하려면 미국, 독일, 호주, 뉴질랜드, 대만처럼 인쇄자료 및 전자출판물 가운데 제외자료 기준을 고시형태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3.3.3 납본부수 및 납본시한의 예외규정 추가
 납본부수는 『도서관법』 제20조 제4항 및 제20조의2 제6항의 위임규정에 따라서 동법 시행

령 제13조 제3항에서 2부(디지털 파일형태는 1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납본시한은 『도서관법』 제20조 제1항에서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주요 국가의 경우와 비교하면 <표 11>과 같다.

먼저 납본부수는 영국, 호주, 일본을 제외하면 대개 2부로 규정한 가운데 대상자료, 출판부수, 자료가격 등에 따라 1부 납본을 예외로 하고 있다. 1부 납본제를 채택한 영국의 경우, BL 납본을 지칭하며 나머지 5개 납본도서관도 요청하면 납본해야 하므로 이들을 포함하면 6부가 된다. 일본은 매우 특이한 사례인데 납본대상을 정부간행물과 민간출판물로 양분하여 국가, 지방공공단체(특별구, 특별지방공공단체 포함), 독립행정법인 등의 출판물은 3부~30부를, 정

촌(특별지방공공단체 포함) 및 그 법인의 출판물은 2부를, 민간출판물은 1부를 각각 납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 납본부수를 2부로 규정한 것은 합당하다. 다만 미국,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처럼 최대 발간부수, 외국에서 인쇄·수입된 자료, 국내에 사업소를 둔 외국자료 배포권자가 수입한 자료, 고가의 도서(잡지 및 전자자료는 연간 구독료) 등을 기준으로 보존용 1부를 납본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09년의 관련연구(노영희 2009, 187)에서 “납본부수를 현재의 2부에서 4부로 늘리고 국립중앙도서관과 분관이 납본도서를 소장·이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쇄물과 오프라인 전자출판물의 경우, 4부를 제출받아 2부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두고 2부는 각 주제별 분관에 두

<표 11> 국가별 납본부수 및 납본시한의 비교

구 분	납본부수			비 고 (1부 납본자료)
	1부	2부	3부 이상	
미 국	□	■	-	• 회화, 도형, 조각물의 저작권자가 5부 미만을 복제·생산한 경우, 한정판 발행으로 2부 납본이 금전적 부담, 부당 또는 비합리적일 경우(면제 가능), 온라인 전자출판물
캐나다	□	■	-	• 온라인 자료(지도, DB 등)
영 국	-	-	■ (6부)	• BL 1부 + 5부(다른 5개 납본도서관이 요청할 경우)
독 일	□	■	-	• 대출가능 악보, 국내 사업소를 둔 외국자료 배포권자가 수입한 자료, 무형의 저작물
프랑스	□	■	-	• 발간부수가 300부 미만인 자료, 외국에서 인쇄·수입된 자료
호 주	■	-	-	-
뉴질랜드	■	■	-	• 인쇄자료: 정가가 도서 1천 달러, 잡지 3천 달러 이상이거나 각 100부 미만 발간자료 • 전자자료: 정가가 1천 달러 이상 또는 연간 구독료가 3천 달러 이상의 오프라인 자료
일 본	■	■*	■** (3~30부)	• 민간출판물
대 만	■	■***	-	• 민간간행물
한 국	□	■	-	• 장애인용 특수자료로 변환·제작이 가능한 자료의 디지털 파일

* 정촌(특별지방공공단체 포함) 및 그 법인의 모든 기관의 출판물, ** 국가, 지방공공단체(특별구, 특별지방공공단체 포함), 독립행정법인 등의 출판물, *** 정부간행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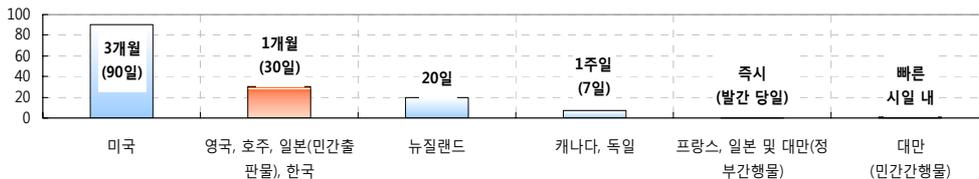
도록 한다”고 제안한 바 있으나 설득력이 약하다. 그 이유는 영국이나 일본을 제외하면 2부 이상을 규정한 국가가 없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6부를 규정하였으나 BL에 1부를 의무납본하고 다른 5개관은 요청에 의한 납본형식을 취하며, 일본은 정부간행물로 한정하여 생산기관에 따라 3~30부를 규정하고 있지만 민간출판물은 1부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납본부수를 4부로 상향조정할 경우에 현재처럼 정가의 50%를 보상한다면 NLK는 최근 납본보상액 평균(20억 내외)보다 2배 이상을 지출해야 하며, 주제별 분관을 이유로 2부를 추가 납본해야 한다면 독일, 영국, 일본도 각각 4부 이상을 납본하도록 규정해야 마땅한데 납본 의무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 실효성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납본시한의 경우, 국가별로 비교하면 <그림 4>와 같다. 가장 긴 미국은 3개월이고, 가장 짧은 프랑스, 일본 및 대만(정부간행물)은 발간 당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가장 보편적인 시한은 1개월(30일)로 영국, 호주, 일본(민간출판물), 한국이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납본시한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무리가 없다. 다만 시한 내에 납본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납본을 요청하고 그로부터 일정 기간(예컨대 1개월) 경과 후에도 납본하지 않으면 독일처럼 해당자료를 다른 방법으로 입수하고 그 비용을 납본 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한편,

발행·제작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 경과하면 NLK가 납본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3.3.4 납본 보상금 및 과태료의 개정

납본 보상금의 경우, 『도서관법』 제20조 제3항은 ‘국립중앙도서관에 ... 납본한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 그리고 제20조 2(온라인 자료의 수집) 제5항은 ‘국립중앙도서관이 ...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 각각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0조 제4항 및 제20조의2 제6항의 위임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및 13조의2 제3항은 각각 ‘... 보상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도서관법』 제47조 제1항은 납본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비매품이면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표 12>와 같다. 따라서 납본 보상금제는 출판진흥 및 법정납본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는 국가장서의 망라적 수집·보존을 위한 최소 담보장치라는 측면에서 용인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은 청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NLK가 대행기관인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합의한 정가의 50%를 지급할 것이 아니라 캐나다가 적용하는 고품



<그림 4> 국가별 법정납본 시한의 비교

〈표 12〉 국가별 납본보상 여부와 과태료 비교

구 분	납본보상 여부	과태료(상한선)
캐나다	고품질 보존용은 1부 제작실비 보상 가능	5,000 CAD(회사는 10만 CAD)
독일	무상납본이 부당하면 신청에 의한 제작비 보조금 지급	1만 EUR
일본	소매가격의 4할~8할 + 최저 우송료 + 출판물당 150엔~170엔 배상(일괄납입 대행사무 수수료)	소매가의 5배
한국	전부나 일부가 판매용일 때 정당한 보상	정가(비매품은 원가)의 10배
미국	× (저작권 보호)	250 USD(고의·반복적 위반시 250 USD + 자료 소매가 + 2,500 USD 추가)
영국	×	재판소에 명령이행 제소
프랑스	×	7,500 Franc
호주	×	100 AUD
뉴질랜드	×	5,000 NZD
대만	×	정가의 10배(납본될 때까지 계속 부가)

질 보존용 또는 독일처럼 무상납본이 부당한 자료로 한정하여 제작실비 지급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대다수 선진국처럼 보상금제를 삭제하고 과태료 증액을 위한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3.5 기타 납본조항의 보완과 추가

여러 선진국에 비하여 국내의 납본조항은 부실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지 못하다. 그 주된

이유는 「도서관법」에서 납본제도를 규정할 수 밖에 없는 법적 한계 때문이다. 따라서 납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법령에 근거한 각종 지침과 기준을 고시로 공포하여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 실무수행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법적 근거의 부족이 초래하는 납본 의무자의 불평과 불만을 해소하는 한편, 실정법의 납본조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표 13〉에 집약한 것처럼 현행

〈표 13〉 「도서관법」의 납본조항에 보완·추가해야 할 내용

구 분	보완·추가해야 할 내용	비고	
납본 대상 자료	인쇄 자료	• 도서의 내용이 동일하면서도 체본형식이 상이할 경우, 가령 동일한 자료가 종이제본과 양장제본으로 발간한 경우에는 양장제본된 자료를 납본해야 한다.	추가
		• 동일한 내용의 자료(도서, 연속간행물, 회색문헌, 지도, 악보 등)가 둘 이상의 언어 또는 복수의 매체로 제작·생산되는 경우, 각각을 별개로 간주하여 납본해야 한다.	"
		• 외국에서 발행·제작된 자료를 수입·유통시키는 경우, 최초의 배포권을 보유한 자가 한국에 사업소 또는 주소를 두고 있으면 납본해야 한다.	"
		• 2부 납본을 원칙으로 하되, 단서조항을 두어 1부를 납본하는 경우의 대상자료를 명시해야 한다.	"
	전자 자료	• 유무형의 전자자료를 납본 또는 NLK의 요청에 의해 제출할 때는 그 자료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과 정보 복제물, 그 부속자료인 사용(취급)설명서, 기타 부대자료도 함께 납본해야 한다.	보완
• 대중이 공중 통신망을 통하여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발행 또는 제작된 오프라인 및 온라인 자료는 이용자가 NLK의 내부 및 웹사이트에서 해당자료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추가	
• NLK는 국가장서를 보존할 목적으로 납본된 모든 전자자료를 복제·제작할 수 있다.		보완	
납본 보상금	• NLK는 납본된 자료에 대한 납본 의무자의 보상금 요청이 비합리적인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반송할 수 있다.	보완	

납본조항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한다.

3.4 납본수집 대상자료의 합리적 유형화

NLK가 수집·보존하는 국가장서는 법정납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그 대상 또한 「도서관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서 규정한 국내 자료를 의미한다. 부연하면 장서개발정책에 근거하여 국내에서 발행·제작된 자료의 납본수집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료의 합리적 유형화를 전제로 수집범위를 최적화해야 하는데, 「도서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13조의2 제1항의 납본대상자료,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국내자료 개발지침, 「2011년도 국립중앙도서관연보」의 자료수집 통계양식에 적용된 유형을 비교하면 <표 14>와 같

다(국립중앙도서관 2011, 국립중앙도서관연보, 310-312: 도서관법시행령 제13조).

그러나 납본대상을 도서관자료와 온라인 자료로 대별한 법령은 후자가 전자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정책문서는 일반자료·특수자료·전자자료로 구분하였음에도 특수자료 가운데 어린이·청소년자료와 일부 단명자료를 제외한 대다수 특수자료가 납본수집에서 배제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연보는 단행본·연속간행물·온라인 자료로 나누고 있으나, 단행본 아래의 도서에 디지털 파일이 있고 연속간행물 하위구분의 하나인 도서에 잡지와 신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CD-ROM을 간기의 유무에 따라 단행본과 연속간행물에 각각 배분한 것은 합리적 유형화로 볼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면 납본대상을 유형

<표 14> 국가장서의 유형화 비교

	「도서관법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의 납본대상자료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국내자료 개발 기본지침		「국립중앙도서관연보」의 자료수집통계 양식
도서관 자료	① 도서 ② 연속간행물 ③ 약보, 지도 및 가제식 자료 ④ 마이크로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 ⑤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 자료 ⑥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⑦ 점자자료, 녹음자료 및 큰 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일반 자료	① 일반도서 ② 참고도서 ③ 연속간행물 ④ 정부간행물 ⑤ 회색문헌 ⑥ 지도자료 ⑦ 사진자료, 약보 등 ⑧ 마이크로자료 ⑨ 시청각자료	단행본	① 도서: 국내서, 국외서, 아동서, 고서, 디지털 파일 ② 비도서자료: 마이크로피시, 마이크로필름, 음향자료, 영상자료, CD-ROM, 낱장지도, 기타
		특수 자료	① 고문헌(고서, 고문서, 고지도 등) ② 영인·복제자료 ③ 어린이·청소년자료 ④ 장애인용 대체자료 ⑤ 다문화자료 ⑥ 단명자료 ⑦ 기타 특수범주자료	연속간행물	① 도서: 잡지, 신문 ② 비도서: 마이크로피시, 마이크로필름, 음향자료, 영상자료, CD-ROM, 낱장지도, 기타
온라인 자료	① 웹사이트 ② 웹자료	전자 자료	① 오프라인(패키지형) 전자자료 ② 온라인(네트워크형) 전자자료 ③ 인터넷(웹) 정보자원	온라인 자료	① 도서: 전자책, 동영상, 음향자료, 이미지, 소장자료 디지털화, 기타 ② 연속간행물: 전자저널, Web DB

화할 때 속지주의, 인쇄여부, 제작매체를 동시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법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결정할 때 속인주의보다 속지주의 적용하는 이유는 국가장서의 망라적 납본수집 및 보존기능을 강화하려면 국내자료 뿐만 아니라 프랑스처럼 수입·유통되는 외국자료도 납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인쇄여부는 가독장치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며, 제작매체는 자기성인지 또는 광학성인지에 따라 가독장치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접근성을 좌우한다. 이러한 구분기준을 적용하여 납본대상 자료에 대한 유형화 모형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인쇄자료: 도서(고서, 영인·복제본 포함), 연속간행물(잡지, 신문, 보유판, 가제식 자료 등), 정부간행물, 회색문헌(연구보고서, 학술대회 및 세미나 자료, 학위논문)
- ② 비인쇄자료: 시각자료(슬라이드, 필름스trip 등), 청각자료(음반, 테이프, CD, 녹음물 등), 시청각자료(CD, DVD, VCD, 비디오 테이프 등), 영화필름(방송 영상자료), 마이크로자료(필름, 피시, 울트라피시, 애플츄어 카드 등)
- ③ 전자자료: 패키지형 오프라인 자료, 네트워크 온라인 자료(웹사이트, 웹DB, 인터넷 자료, 소프트웨어, 검색엔진, 컴퓨터 게임, 블로그 등), 디지털 파일, 인쇄자료의 디지털 버전 등
- ④ 특수자료: 사진, 악보, 지도·설계도 등, 규격과 특허, 장애인용 대체자료(시각장애 인용 점자도서, 녹음도서, 큰활자도서, 데이지, 점·목자혼용도서, 화면해설비디오, 촉각도서 등, 청각장애인용 수화영상도서,

수화·자막삽입 영상물, 읽기 쉬운 도서 등), 한정판, 입체형 실물(메달, 기념패 등)

- ⑤ 단명자료: 팸플렛, 리플렛, 포스터, 광고·홍보자료, 저명인사 서신, 운행시간표, 백지장부나 서식, 달력·비망록, 학생 리포트, 보도자료, 초대장, 거래목록, 프로그램 및 카드, 포스터 등

- ⑥ 외국에서 수입·배포하는 자료

3.5 자료유형별 납본수집 범위의 최적화

NLK가 국가장서를 충실하게 구축하려면 납본수집 범위의 최적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실정법에 규정된 자료유형의 전면적 개정, 개별자료의 하위종류나 매체, 자료유형별 납본수집의 강도, 추가 또는 제외해야 할 자료 등을 중심으로 최적화 모형을 제안하면 <표 15>와 같다.

첫째, 인쇄자료 가운데 도서는 주제, 이용계층, 판형을 불문하고 완벽하게 수집하되, 동일한 내용 및 서지정보로 구성된 재판도서는 제외해야 한다. 동일한 도서가 여러 제본형태(종이제본, 양장제본, 바인더형, 파일링 등)로 출시된 경우는 양장본의 납본수집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연속간행물 중 ISSN이 있는 잡지나 학술지는 이용계층의 연령이나 대상을 불문하고 완전하게 납본수집해야 한다. 그리고 간기와 연속성을 지닌 단행본 중의 총서는 도서에, 정부 및 자치단체의 백서, 통계연감, 연보 등은 정부간행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기업, 단체 등의 정기적 뉴스레터, 대학 학과단위의 학회보 등은 제외한다. 정부간행물은 시장을 통한 구입가능성을 불문하고 누락없이 수집

〈표 15〉 자료유형별 납본수집 범위의 최적화 전략

자료유형과 범위		수집전략*			수집 제외자료	
		소극적	적극적	망라적		
인쇄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도서(양장제본 자료의 우선 납본수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SBN, 판권기 부재도서 재판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속간행물: ISSN이 부여된 잡지, 신문, 가제식 자료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단체의 뉴스레터 대학 학과단위 학회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간행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준공공기관(공익법인, 특수법인)이 발행한 자료(대외비 자료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행정단위에서 생산된 자료 중 법규, 재무제표, 회의록, 지방세 납부자 보고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색문헌: 조사연구보고서, 학술세미나 자료, 학위논문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사학위논문(인쇄본) 	
비인쇄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청각자료: 시각자료(슬라이드, 필름 등), 청각자료(음반, 테이프, CD, 녹음물 등), 시청각자료(CD-ROM, DVD, VCD, 테이프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제품, 해적판 영화필름(방송영상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이크로자료: 필름, 피시, 울트라피시, 애플츄어 카드 등의 원본과 대체버전 		●			
국내 전자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패키지형 오프라인 자료: CD-ROM, DVD, 서지·원문DB, 전자책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큐멘터리, 텔레비전 시리즈, 애니메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트워크계 온라인 자료(웹사이트, 웹DB, 인터넷 자료, 소프트웨어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색엔진, 컴퓨터 게임, 개인 홈페이지, 전자우편, 블로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디지털 파일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쇄자료 등의 디지털 버전 		●		-	
특수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날장자료: 사진, 약보, 지도자료, 설계도 등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격 및 특허자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용 대체자료: 시각장애인용 점자도서, 녹음도서, 큰활자도서, 전자책, 데이지, 점·목자혼용도서, 화면해설비디오, 촉각도서 등, 청각장애인용 수화영상도서, 수화·자막삽입 영상물, 읽기 쉬운 도서 등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정판으로 발행·제작된 인쇄자료, 비인쇄자료, 전자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부 이하 발간물 	
단명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체형 실물자료(메달, 기념패, 조형물, 모형, 문장 등)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명자료: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 각종 법인·단체의 전국단위 행사 등을 위한 팸플릿, 포스터, 홍보자료, 저명인사 친필원고나 서신 등 보존 가치가 높은 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행시간표, 백지장부·서식, 달력·비망록, 학생리포트, 보도자료, 초대장, 거래목록, 프로그램 및 카드, 사내용 메뉴얼, 의사록, 부분 인쇄자료, 상업광고 등 	
외국	수입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에 주된 거주지 및 주소를 둔 한국인이 최초 국내 배포권자인 단행본, 전자자료(폐기지형 및 네트워크 DB, 전자잡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행본은 100부 이상

* 소극적: 납본수집에 의한 최소 수준(목표 수집률 50%)
 적극적: 납본수집+납본요청에 의한 학술연구 지원수준(목표 수집률 80%)
 망라적: 납본수집 + 납본요청 + OASIS를 통한 자동수집 + 디지털화 등을 적용한 완전한 수준

해야 한다. 회색문헌 중에서 보고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기록원, 한국연구재단 등이 주제별 내지 생산주체별로 수집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서로서의 무결성 확보차원에서 최대한 수집해야 하며, 누락률이 가장 높은 학술대회 및 세미나 자료도 납본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 학위논문의 경우, 주요 선진국은 형태적 및 내용적 보존가치를 불문하고 납본수집하고 있으므로 NLK도 박사논문의 인쇄본과 전자버전은 완전하게 납본수집하고 석사논문은 디지털 파일로 납본·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인쇄 자료 중 시각자료(슬라이드, 필름스트립 등), 청각자료(음반, 테이프, 녹음물 등), 시청각자료(CD-ROM, DVD, VCD, 비디오 테이프 등)는 납본수집을 강화해야 하되 복제품, 해적판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이크로자료(필름, 피시, 울트라피시, 에피추어 카드 등)는 원본이든 인쇄자료 대체본이든 적극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그러나 영화필름(방송 영상자료)은 한국영상자료원이 수집주체이고 국가기록원도 제출받고 있으므로 NLK의 납본수집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

셋째, 전자자료 중 패키지형 오프라인 자료(CD-ROM, DVD, DB, 전자책 등)는 납본대상이므로 최대한 수집해야 한다. 반면에 납본대상이 아닌 네트워크 온라인 자료(웹사이트, 웹 DB, 인터넷 자료, 소프트웨어, 검색엔진, 컴퓨터 게임 등)는 7개 선진국(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일본)처럼 납본대상으로 간주하여 『도서관법시행령』 제13조에 포함시키되 일정기간 관내 또는 웹사이트를 통한 접근·이용을 불허한다는 전제 하에 적극 수집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의 온라인 자료에는 'NLK가 보존용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파일은 『도서관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각호 중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로 변환 및 제작이 가능한 자료'로 한정하였으나, 대중의 접근·이용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모든 디지털 파일을 납본대상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복제물 제작을 허용하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인쇄자료 등의 디지털 버전은 패키지형이나 파일형을 불문하고 NLK의 요청에 의한 의무적 납본을 강제하여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특수자료 가운데 국가장서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낱장형태(사진, 악보, 지도자료, 설계도, 해도 등)는 보존적 가치에 무게중심으로 두고 망라적 납본수집 전략을 적용해야 한다. 규격 및 특허자료는 특허청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이 망라적으로 수집할 뿐만 아니라 양대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근·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납본수집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장애인용 대체자료(시각장애인용 점자도서, 녹음도서, 큰활자도서, 전자책, 데이지, 점·목자혼용도서, 화면해설비디오, 촉각도서 등, 청각장애인용 수화영상도서, 수화·자막삽입 영상물, 읽기 쉬운 도서 등)는 인쇄여부, 매체의 성격과 종류, 온라인 이용가능성을 불문하고 적극 수집해야 한다. 한정판으로 발행 또는 제작된 자료 가운데 납본대상인 인쇄자료, 비인쇄자료, 전자자료의 부수는 1부로 축소하는 예외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절판자료는 영인본을 구입하거나 디지털화하여 국가장서의 결락현상을 막아야 한다. 입체형 실물자료

(메달, 기념패, 조형물, 모형, 문장 등)는 납본하는 사례가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각종 박물관, 기록관, 기념관 등이 수집·보존하므로 가장 소극적인 납본수집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납본수집이 어려운 단명자료(팝플렛, 리플렛 등)는 보존가치가 높은 것에 한하여 수집기준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납본요청하고 인터넷 디지털 파일을 선별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특히 다양한 국제행사, 국가 및 자치단체가 주관한 공식행사, 각종 법인·단체의 전국단위 행사 등을 위한 팝플렛, 포스터, 홍보자료, 저명 인사의 친필원고나 서신은 실물을 최대한 수집하고 디지털 버전도 아카이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 국가도서관이 적용하는 운영시간표, 백지장부나 서식, 기관단체의 달력·비망록, 학생 리포트, 매스컴 보도자료, 초대장, 거래목록, 프로그램 및 카드, 사내 교육훈련용 메뉴얼, 회의 의사록, 간행물 부분발체 자료, 상업 광고 등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외국에서 수입·배포하는 자료는 「도서관법」 제20조 제1항 ‘누구든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 납본하여야 한다’는 속지주의가 적용되므로 납본대상이 아니다. 반면에 프랑스는 외국에서 발행·제작된 자료를 수입·유통시키는 경우, 최초 배포권자의 사업소 또는 주소가 자국에 있으면 수입한 자료를 납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자료는 단행본(100부 이상), 패키지형 전자출판물(웹DB, 전자잡지)로 한정하여 국내에 주된 거주지 및 주소가 있는 내국이 최초의 국내 배포권자일 경우에 납본대상이 포함시킬 때 국가장서의 충실화 및 외연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4. 요약 및 결론

어느 국가도서관이든 자국에서 발행·제작된 자료의 납본수집 기능이 부실하면 국가장서의 망라적인 수집·보존을 표방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NLK의 납본수집력 강화방안을 다각도로 제안하였다. 그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납본법제의 전향적 개편이 시급하다. 이를 위하여 가칭 ‘국가도서관법’의 법제화, 납본법의 제정, 「도서관법」에 규정된 납본조항의 대대적 보완 등이 필요하다.

둘째, 납본규정(지침, 기준)의 추가 개발과 보완이 필요하다. 어떤 법제적 개선방안을 채택하든 자료를 발행·제작한 자가 성실하게 납본하도록 유인하려면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의 납본조항을 중심으로 위임된 사항이나 실무수행을 위하여 더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실정법상의 납본조항 및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 납본주체(납본 의무자)의 확대, 납본대상 및 제외자료의 구체화, 납본부수와 납본시한의 보완, 납본 보상금제와 과태료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납본수집 대상자료의 합리적 유형화가 요구된다. 납본 대상자료에 속지주의(외국에서 수입·유통되는 자료로 확대), 인쇄여부(기독교 장치 필요성 여부), 제작매체(오프라인 및 온라인 접근성) 등의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여 6가지(인쇄자료, 비인쇄자료, 전자자료, 특수자료, 단명자료, 외국 수입·배포자료)로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자료유형별 납본수집 범위에 대한 최

적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인쇄자료와 전자자료 및 특수자료(주요 낱장자료 및 장애인용 대체자료)에는 망라적 수집, 비인쇄자료에는 적극적인 수집, 그리고 단명자료와 외국 수입·배포자료에는 소극적 수집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컨대 NLK는 다각도로 납본수집력 강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 이유는 납본수집의 충실화가 지식문화유산 총괄기관으로서의 역량과

위상을 제고시키는 첩경인 동시에 지식선진국을 견인하는 기초작업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를 전제로 국내에서 발행·제작된 모든 유용한 자료를 납본수집하고 외국의 고품질 학술연구 자료를 확보하여 선진국형 국가장서를 구축할 때 아날로그 공백(analog blank)과 디지털 블랙홀(digital black hole)을 막을 수 있고 당대의 지적 갈등을 해소하면서 후대를 위한 지식문화유산의 자존심과 보고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簡耀東. 2001. 淺談我國出版品法定送存制度. 『全國新書資訊月刊』, 2: 16-17.
- [2] 국립중앙도서관. 2011.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관리정책』. 서울: 동도서관 자료기획과.
- [3] 국립중앙도서관. 2012. 『국립중앙도서관연보 2012』. 서울: 동도서관.
- [4] 국립중앙도서관. 2014. 『국립중앙도서관 2014~2018』.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5] 김홍렬. 2012. 국내 출판물의 유형별 발간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동계 학술발표회』, 147-168.
- [6] 노영희. 2009. 국내의 국가도서관 납본절차 분석을 통한 납본업무의 합리적 운영방안 도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4): 173-189.
- [7] 오선영, 정연경. 2012. 출판사의 납본 인식을 통한 납본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4): 141-160.
- [8] 윤희운. 2003. 한국의 납본제도 개선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4): 23-52.
- [9] 윤희운. 2014. 『장서관리론』, 완전개정 제3판. 대구: 태일사.
- [10] 최재황, 광승진, 김정택. 2009.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체계 및 이용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1): 209-232.
- [11] Larivihre, Jules. 2000. *Guidelines for Legal Deposit Legislation*. Paris: UNESCO.
- [12] Stirling, Peter et al. 2012. "The State of e-legal Deposit in France." *IFLA Journal*, 38(1): 5-24.
- [13] Muir, Adrienne. 2005. *Legal Deposit of Digital Publications*. A Doctoral Thesis, Loughborough University.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2]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1. *NLK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Seoul: The Library.
- [3]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2. *TAnnual Report 2012*. Seoul: The Library.
- [4]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4.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4~2018*. Seoul: The Library.
- [5] Kim, Hong Ryul. 2012. "A Study on the Publication Status by Material Type in Korea." *Winter Seminar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147-168.
- [6] Noh, Young Hee. 2009. "Suggesting the Reasonable Legal Deposit Operating Plan through Analyzing the Legal Deposit Process of National Libraries of the World."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4): 173-189.
- [7] Oh, Sun Young and Chung, Yeon Kyoung. 2012. "A Study on Improving Methods for Legal Deposit System in Korea through Publishers' Recognitions about Legal Deposit."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4): 141-160.
- [8] Yoon, Hee Yoon. 2003. "A Study on the Reform Model of Legal Deposit System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7(4): 23-52.
- [9] Yoon, Hee Yoon. 2014. *Collection Management*. Complete Revised Third Edition, Daegu: Taeil.
- [10] Choi, Jae Hwang, Kwak, Seung Jin and Kim, Jeong Taek. 2009. "A Study on Legal Deposit Process and Use of Online Digital Material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1): 209-232.